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기술지원기구 설치 필요성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The Need of Establishing Technical Supportion Institute for Public Database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al.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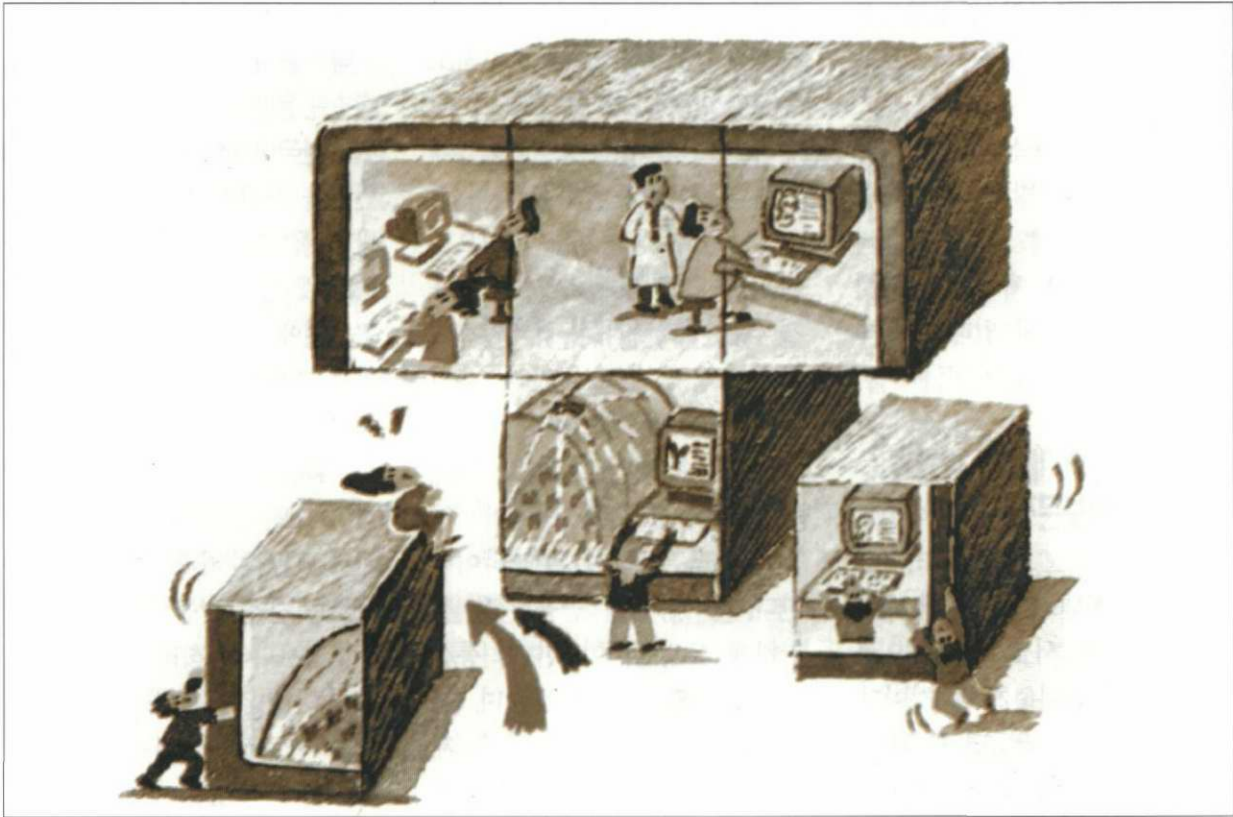
UR협정의 타결에 따라 WTO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96년도 이후 부터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자유화와 개방화가 뒤따르게 된다. 통신시장 역시 개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은 세계적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내적(對內的) 즉 국내 통신사업자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번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추진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설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을
활성화 해야....
”

제정하면서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우선 국내적으로 개방화·자유화를 서둘러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외국의 선진사업자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정책방향은 언론등 각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제정된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목적규정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가 뒤따라야 한다. 시장경제 일반원리와 같이 통신시장의 경우도 자율화, 개방화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없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에서 정보통신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①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한 경쟁, 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

행 ③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등 개방화·자유화에 의한 「공정경쟁의 원칙」을 법적 차원에서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7월 4일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첫째,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종래에 실시하던 사업허가 신청에 있어서 정부의 사전공고 방식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한다.

경쟁확대계획을 연도별로 점

진적으로 추진한다. '95~'96년도는 현행법 체제하에 국내 경쟁을 확대하고, '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경쟁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둘째, 한국통신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국내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하여 경영상의 자율성·융통성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사업을 허용한다.

셋째,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공정경쟁 규제절차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통신자원 관리의 효율화,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정경쟁환경은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위의 3가지 통신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을 개방화, 자유화를 통하여 공정하게 경쟁함으로써 국내통신사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통신시장의 개방과 정보의 공공성확보문제

앞으로 '96년부터는 국내 대기업등 재벌이 서로 경쟁적으로 통신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PC통신 신규진출 업체로서 삼성데이터 시스템, LG전자, 현대전자, 한진정보통신, 한화그룹, 한국전력 등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참여하여 컴퓨터 통신업계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를 맞이할 전망이다(95. 7. 9 중앙일보).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컴퓨터 통신망 사업에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2000년대 초고속정보 통신망시대를 맞이하여 그룹 경영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벌들의 통신망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우리사회의 정보화를 빠른

시기에 실현할 수 있다. 넉넉한 자본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통신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의 정보화촉진에 기여할 수 있고, 참여 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통신망사업은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즉 '통신의 공공성'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매체는 국민 전체의 것이며, 특정재벌들이 소유할 수 없다. 재벌의 생리로 보아 통신의 공공성보다도 오히려 상업성 즉 지나치게 이윤추구에만 주력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실제로 PC통신망 사업참여 재벌들의 정보서비스 내용을 보면 그때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95. 7. 9 중앙

일보 보도).

대부분의 대기업이 상품정보, 홈쇼핑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 PC통신 회원이 100만명을 초과하고 곧 200만에 육박할 전망이다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자기회사 제품을 상품광고선전에 이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기회사 통신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흥미본위 또는 자극적인 오락위주의 정보를 보낼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건전한 정보도 등장할 수 있다. 정보의 공공성보다 오히려 상업성, 오락성 위주의 정보들만 PC통신망을 사로잡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유치도 있지만 국민들의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된다. 초고속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국민 전체가 유익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정보' 보다는 상업성·오락성 또는 불건전한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할 우려도 있다. 특히 외국의 선진사업자가 우리나라 정보시장을 석권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측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정보주권'의 상실을 가져오고 새로운 형태의 '통신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비관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만약 현실적으로 초래된다면 정말로 정보통신시장에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내쫓는다'는 그레삼법칙이 예외없이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민일반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는 양화이고, 오락성, 퇴폐성 등 불건전정보는 악화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을 때 놀러다니는 행락자동차만 질주하고 이에 밀려 수출상품과 원자재를 수송하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결과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역기능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양화(良貨)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 추진기구의 설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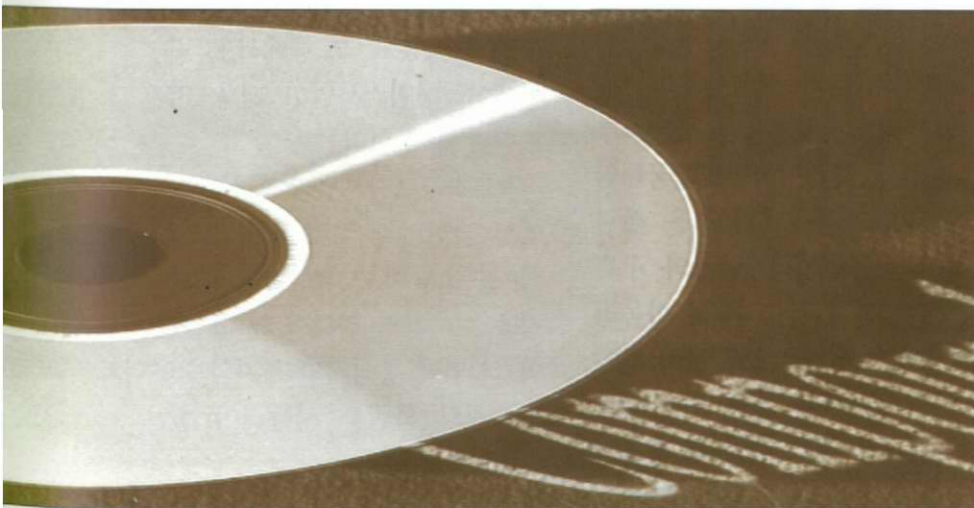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에 따라 상업성·오락성 데이터베이스가 성황을 이루고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임은 틀림없다. 현재 PC 통신의 이용실태를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사업 중에 공공데이터베이스는 이용이 저조하고 상업용 또는 오락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이용율이 높다.

앞으로 한국통신(하이텔)마저 민영화되어, 현재의 공기업 측면에서의 경영방식이나 정보서비스의 기본방향을 완전히 바꾸

어 상업성 즉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온 공공데이터베이스 지원기구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 예컨대, 총무처의 경우 행정정보일반, 법제처의 경우는 법령데이터베이스, 대법원의 판례데이터베이스, 노동부의 취업정보, 통상산업부의 산업기술 및 무역정보등 각 부처에서 국민일반에게 유익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제공에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예산부족,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곤란, 정보서비스등 경영의 전문성 결여 등등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현재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그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제약여건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할 수 있는 법정기구 예컨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가칭)과 같은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그동안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지원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한국통신의 축적된 기술과 사업경험 기타 유용한 정보들과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받아야 한다.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에서 단절은 있을 수 없다. 그래야만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분야가 높은 경쟁력을 갖출수 있고 세계시장에 진출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투자정보, 학술정보, 문화정보 등이 전세계에 확산될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임은 당연하다. 한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추진기구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간의 데이터베이스개발정보 교류의 단절로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의 중복 투자·개발, 기반시설 중복설치 기타 예산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등으로 국가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새로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1조에서 공공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 교육, 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은 공공분야의 정보화 즉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과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가능하고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지원은 전문화, 표준화의 기술을 축적한 「전문기술지원기구」의 설립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가칭)을 설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과 아울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등에서 중복 또는 과잉 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의 교류와 조정역할도 해야 한다.

☞ 맺음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목적규정에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고 밝혔다.

여기서 '정보통신의 기반' 이라 함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① 정보통신기기, ② 소프트웨어, ③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동법 2조 5호 참조).

다시말하면 정보통신의 기반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정보통신망과 기기를,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는 국민생활에 유용한 건전성을 갖춘것들 즉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공공데이터베이스사업이 더욱 저조한 상태에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목적규정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사업에 중점적인 투자와 지원체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DC**